2019년 연간 감사계획

2019. 1

감 사 실

〈 2019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 실시)

>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규정 제14조 (감사계획의 수립)

>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거래소의 운영방침을 반영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2007. 9. 28 개정)

▷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2019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함

순 서

1 대내·외 여건 전망

2 2019년 감사 기본방향

3 세부 업무계획

1. 사전예방 중심의 종합감사

가. 직무감사 시범시행

나. 제주본부 일반감사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가.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나. 일상감사 회피사안 점검

3.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 징계양정절차 확립

나. 특정감사 기능 강화

1 대내·외 여건 전망

(1) 대외 환경

□ '인권존중, 사회적 가치,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반부패/청렴 요구수준 상승**

□ 감사원, 산업부 이외에도 국무조정실(공직기강 점검), 권익위(윤리경영 및 내부견제시스템 평가) 등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감사업무의 범위가 확장**되고, **업무처리 난이도 증가**

□ 반부패·청렴이 국정 핵심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알선·청탁·금품·향응 제공 등과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장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예방점검 필요성 대두**

(2) 대내 환경

□ 내부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 및 **청렴의식 강화**로 **내부 공익신고 증가 추세**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지자체·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빛가람청렴문화제의 지속 개최** 등 **청렴문화 성숙·정착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필요

□ 부패·비리에 대한 **내부 감찰활동 강화와 더불어** 업무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 있는 **부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도출, 사전 예방차원의 실질적 부패방지 대책 필요성 대두**

② 2019년 감사 기본방향 (전력거래소 기강확립)

□ **(예방감사 기능강화) 우리 거래소**에 맞는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 수립으로 **임·직원 부패행위 재발방지** 및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 ㅇ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관련부서간 합의를 통해 기관 특성에 적합한 부패예방의 제도적 장치 마련
- ㅇ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와 일상감사 강화로 사전 예방적 감사 실시

□ **(감사 프로세스 명확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향 등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부패위험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명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ㅇ 부패발생 요소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위험 요인 원천 차단 (**사후적발 → 사전예방**)

□ **(감사기능 확대) 비리·청탁 행태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감사기능 확대**

- ㅇ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감사 품질 제고
- ㅇ 계약, 채용 등 취약업무 분야 집중점검으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 ㅇ 부패 위험업무에 대한 절차 명확화 및 검증체계 구축

□ **(갑질근절 체계 마련) 우리 실정에 맞는 갑질피해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ㅇ 정부 **갑질피해 근절** 가이드라인 근간으로 갑질 예방 및 피해 관련 규정(감사·인사·계약 등) 명문화
- ㅇ 임직원에 대한 갑질 개념 및 사례 등에 가이드라인 교육 시행

3 세부 업무계획

1 사전예방 중심의 종합감사

가. 직무감사 시범시행

□ **현 황**

- ㅇ 그간에 부정청탁 및 횡령 등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사후처리 및 징계중심으로 감사 시행
- ㅇ 전력거래소 설립 이래 **본사에 대한 정기 감사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지사에 대해서는 각 지사를 순환하면서 정기 감사 시행

□ **문제점**

- ㅇ **정기적인 사전예방점검감사 부재**로 인해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기능이 없음
- ㅇ 그간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 마다 임시방편으로 **재발방지대책만 수립하고 시행 및 이행점검은 소홀**히 하다 보니 비위행위가 재발

□ **추진계획**

- ㅇ **(감사체계)** 사내 관련분야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시행
- ㅇ **(감사방향)**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닌 제도 및 직무수행의 적정성 점검을 통한 **제도 및 직무관행 개선이 중심**
- ㅇ **(감사시행)**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직무감사 시범실시·평가 후 '20년부터 분야별로 순환 감사시행**
  - 감사기간 : 2019. 9월 중
  - 대상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감사범위 : 감사대상 기간에 수행한 모든 업무

나. 제주본부 일반감사

☐ **감사의 종류 : 종합업무감사**

☐ **감사대상부서 : 제주지사(기타 관련 처 · 실)**

- ㅇ 사업소는 격년 시행 원칙 (2018년은 경인지사 시행)
- ㅇ 제주지사에서 제주본부로 조직·정원 확대 및 제주 신재생에너지 선도정책의 성공적 추진 등 사전 예방적 업무감사 필요에 따라, 제주본부를 감사대상 부서로 정함

☐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ㅇ 업무수행 시 법규준수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 ㅇ 제주본부 운영 및 업무실태 점검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필요시 업무지도 및 개선방안 강구)

☐ **감사기간 : 2019. 10월 중 (5일)**

☐ **대상기간 : 2018. 1월 ~ 2019. 9월**

☐ **감사범위 : 감사대상 기간에 수행한 업무 전반**

- ㅇ (사무) 인사, 교육, 회계, 총무, 보안, 복무 등
- ㅇ (기술) 계통운영, IT시스템, 설비운영, 유지보수 등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가.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 목적

- ㅇ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예산 부당집행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
- ㅇ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투명성 제고와 개선방안 이행의 실효성 제고**
- ㅇ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기대수준 증대에 따른 행동강령 이행여부 점검

□ 중점 점검분야

- ㅇ 복무규정 준수 실태, **취약분야(시기) 근무기강 확립 상태**
- ㅇ 금품수수, 음주운전, 기강해이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 ㅇ 무사안일, 복지부동, 민원인 불편초래 등 부당업무행위 발생 여부
- ㅇ 공직기강 취약분야 제도개선 이행실태

□ 연중 점검계획

- ㅇ 취약시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8회/연)
- ㅇ 설 · 추석 명절 및 하계휴가, 인사철 등 **취약시기 중점 점검**
- ㅇ 봉인, 자체기동발전기 시험 등 **고객 접점 현장업무 불시점검**
- ㅇ 점검 사항
  - 부서 · 팀별 근태관리 등 복무기강 점검/부당 업무처리 사례 등
  - 법인카드 집행기준 위반사항
  - **외부강의 신고 및 운영실태 일제 점검**(7월)
  - 금품 · 향응 수수, 인사 청탁, 예산 부당집행 사례
  - 보안 ·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

나. 일상감사 회피사안 점검

☐ **현황 및 문제점**

- ㅇ 실무부서가 감사규정에 따라 개별 사안이 일상감사 사안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상감사 요청
- ㅇ 실무부서의 **착오에 의한 일상감사 누락** 또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일상감사를 회피할 가능성** 있음

☐ **(근거규정) 감사규정 제40조 및 제41조**

- ㅇ 일상감사 의견서 조치결과 및 누락사례 확인(제40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제41조) 의무화

☐ **(감사대상)** 2018~9년 중 수행된 모든 일상감사 대상 업무

☐ **(감사일정)** 2018년 업무는 '19년 5월, 2019년은 '19년 4분기

☐ **(감사방법)** 일상감사 미수검 문서(부서장 이상 결재 건) 전수조사

☐ **(중점사안)** 계약금액 나누기 등을 통한 **고의적인 일상감사 회피**

☐ **(감사결과 처리)** 특정조사 처리절차(감사규정 32조)에 준하여 처리

< 일상감사의 범위 >

- ㅇ 정관 및 내규, 지침 (기준)의 제정 및 개폐
- ㅇ 이사장 의사결정에 관한 주요 결재 사항
- ㅇ 2천만원 이상의 지출원인행위 및 5백만원 초과 수의계약 등

3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 징계양정절차 확립

□ **현황**

○ 사안에 따라 감사실장 판단 하에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거나, 징계양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양정수준의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문제점**

○ 징계양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징계양정이 이루어져 **사후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

○ 과거와 다르게 직원들이 비위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개선**

○ **징계양정에 대한 법률자문 시행**(법률, 노무 등 사외전문가 활용)

○ **사내·외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로 구성된 징계양정위원회**를 통해 징계(양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징계양정절차(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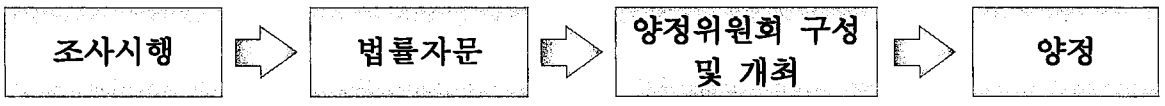

가. 특정감사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부 감사, 검찰수사, 노조파업 시도 등으로 인해 회사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함에 따라 기강해이 심각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공익제보가 활성화에 따라 그간에 내재되어 있던 각종 문제점 노출**

-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무고행위 빈발

○ 내부문제를 **외부기관으로 익명제보가 활성화**함에 따라 우리 거래소 이미지 추락 심각

□ 개선방법 및 원칙

○ **(감사체계)** 감사실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감사실 주관으로 하되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투입**

○ **(감사사안)** 회사의 이미지 실추사안, 근무태만, 비위행위, 회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

○ **(감사시점)** 조사대상 사안을 인지한 후 **감사실 내사를 통해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

* 비위 및 부패행위자, 근무태만 및 업무 해태자, 성희롱 등에 특정감사 처리는 관용 없는 엄정한 처리를 원칙으로 함